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장섭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6387

발의연월일: 2022. 7. 11.

발 의 자:이장섭·권칠승·김정호

박광온 · 양정숙 · 유정주

유영차 • 이병훈 • 이학영

인재근 · 임호선 · 최혜영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평택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굴착기 운전자가 부주의한 운전으로 초등학생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하는 사고 가 발생했음.

그러나 현행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에게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가중처벌하는 대상을 굴착기 등 일부 건설기계가 포함되지 않은 「도로교통법」상 "자동차"의 운전자로 규정하고 있어 굴착기 등 건설기계 역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의 의무를 다하도록 현행법의 범주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가중처벌 대상에「건설기계관리법」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의 운전자를 포함하도록 하여 어린이를 사망 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함으로써 어린이 교통안전 및 질서의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5조의13). 법률 제 호

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조의13 각 호 외의 부분 중 "자동차(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)"를 "자동차등(원동기장치자전거 및 「건설기계관리법」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)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의13(어린이 보호구역에서	제5조의13(어린이 보호구역에서
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) <u>자</u>	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) <u>자</u>
동차(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	동차등(원동기장치자전거 및
<u>한다)</u> 의 운전자가 「도로교통	「건설기계관리법」 제26조제1
법」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	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
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	건설기계를 포함한다)
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	
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	
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	
어린이(13세 미만인 사람을 말	
한다. 이하 같다)에게 「교통사	
고처리 특례법」 제3조제1항의	
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	
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	
다.	
	
1. • 2. (생 략)	1.・2. (현행과 같음)